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진선미・인재근・남인순

박완주・도종환・김진표

최혜영 • 기동민 • 진성준

아슈전(비) • 권인숙 • 조오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,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, 성 주류화 조치의 주요 제도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가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,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공공기관"을 "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"을 "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"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"을 "공공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)	제9조(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)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	①
및 시행계획을 수립・시행하기	
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	
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<u>공</u>	
<u>공기관</u>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	<u>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</u>
할 수 있다.	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
	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
	다)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
	<u>하여 설치된 기관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성인지 통계) ① <u>국가와</u>	제17조(성인지 통계) ① <u>국가, 지</u>
지방자치단체는 인적(人的) 통	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헌법
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	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
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	관은
로 구분한 통계(이하 이 조에	
서 "성인지 통계"라 한다)를 산	
출하고,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	
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적극적 조치 등) ①・②	제20조(적극적 조치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<u>「공공기</u>	③
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	관
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	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	
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	
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	
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	
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	
매년 공표할 수 있다.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